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가단5081281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상연, 김정동, 백지웅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안

담당변호사 공대호, 곽정훈, 김현익, 명광재

신동호, 최병천, 임재혁, 이인석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70,984,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조합 'D마트(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 관하여,
가. 2020. 4. 1. 체결된 소외 C 지분 19.999% 이전에 관한 동업계약 및
나. 2020. 7. 14. 체결된 소외 C 지분 0.001% 이전에 관한 지분 양도양수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조합 'D마트(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의 지분 20%를 양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경 그 아버지인 C와 'D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슈퍼마켓'이라 한다)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의 지분을 80%, C의 지분을 20%로 하여 피고가 8억 원, C가 2억 원을 출자하고,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C는 2017. 4. 24.경부터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함께 이 사건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와 C는 2020. 4. 1.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을 원고 99.999%, C 0.001%로 변경하였다가 2020. 7. 14. C의 지분을 원고에게 135,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지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20. 4. 1. 지분 19.999% 양도행위 및 2020. 7. 14.자 지분 0.001% 양도행위를 '이 사건 양도행위'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2. 24.경 C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E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위 E조합에 주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위 계약에 따른 위 E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원고가 위 거래계약에 따라 위 E조합에 주류를 공급해왔는데, 위 E조합은 2020. 2. 20.경부터 물품대금 584,183,875원을 미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C에 대한 보증채무금 청구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811563호로 C를 채무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0. 7. 6. 제3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2020. 7. 9. 제3채무자들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341213호로 원고가 보증보험을 통해 회수한 1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주류대금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8. 7. 404,183,8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0. 8. 2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22006호로 C를 채무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 584,183,875원 중 일부인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 410,074,828원(이하, 위 채권과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 중 410,074,8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9. 15. 인용되었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9. 18.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아. 이후 원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물상보증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서울 동작구 F 제2층 G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1. 6.경 133,198,937원을 회수하였다[이로써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원금은 270,984,938원(584,183,875원-180,000,000원-133,198,937원)이 남아 있게 되었다].

자. 피고는 2020. 8. 24.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가합574859호로 원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11563 채권가압류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20. 7. 9.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341213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20. 9. 18.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22. 3. 2. 위 사건 계속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4431호(반소)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4. 19. 위 반소를 취하하였다.

차. 위 재판부는 2022. 7. 21. “위 가압류결정 중 본압류로 이전된 410,074,828원 부분의 집행 자체에 대하여 다툼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은 피고와 C가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으로서 민법상의 조합계약이고 피고가 2020. 7. 14. C와 사이에 C의 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C는 2020. 7. 14.경 위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본 다음 이 사건 슈퍼마켓 운영을 통해 제3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을 신용카드 매출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2020. 7. 9. 당시 조합채권이거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2020. 9. 18. 당시 잔존 조합원인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별지 3] 관련사건의 판결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8. 13. 확정되었다.

카. 원고는 2020. 5. 20.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H 임야 330㎡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9299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20. 5. 26.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C는 2020. 4. 2. I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 4. 2. 접수 제5894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J은 2020. 9.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7469호로 I 등을 상대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2021. 5. 12. 무변론 판결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하고 위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6.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C는 원고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고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자 이를 면한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슈퍼마켓의 동업지분을 양도하였다. 이 사건 양도행위는 강제집행면탈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러한 C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공범으로서 적극 가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잔존 물품대금채권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양도행위를 '진의에 의한 양도행위'로 보아 이로 인하여 C는 2020. 7. 14.경 위 조합에서 탈퇴하였고 이로써 신용카드 매출채권은 잔존 조합원인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았는바, 이 사건에서 갑 11, 12, 13호증의 기재 및 영상, 증인 K의 일부 증언 등이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의 위 인정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예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원물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는 C에게 위 지분 20%를 양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행행위 취소의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아래 2020. 10. 26.)로부터 1년이 도과된 이후(2022. 3. 29.)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을 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관련판결 사건에서 2020. 10.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별지 4] 2020. 10. 26.자 준비서면의 내용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0. 26. 이전에 채무자인 C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점(원고는 위 준비서면을 통하여 C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사실, 채권가압류 등을 통하여도 책임재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또한 2020. 5. 20.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H 임야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인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한 점,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J이 I를 상대로 하여 별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 점, 실제로도 주식회사 J은 2020. 9. 1. I를 상대로 하여 2020. 4. 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점, 이 사건 양도행위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즈음인 2020. 4. 1.과 2020. 7. 14.에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는 위 법리에서 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가압류 무렵인 2020. 5. 26. 또는 늦어도 위 2020. 10. 26. 즈음에는 C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양도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인 2022. 3. 29. 제기되었으므로 위 채권자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

별지